

과천도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2. 6. 28. 지침 제5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제반 업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결사항)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채감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사채발행 방법 및 규모 결정
3. 금융기관 차입 방법 및 규모 결정
4. 기타 보상비·공사비 및 사업이익을 증감 등 리스크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 라 한다)이 공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문장으로 한다.

② 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련 부서장 및 팀장을 배석위원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① 정기위원회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주관부서는 위원회 개최일 3영업일 전까지 회의안건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전을 부의하고 각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안전의 부의는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며, 안전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항의 보고는 주관부서장, 관련업무 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주관부서는 위원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사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전과 그 결과, 반대의견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보관한다.

⑤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안전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공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서면개최를 하는 경우 간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의사항에 대한 기표 결과를 사후에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리스크관리 심의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제정 2022. 6. 28. 지침 제5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부의안건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제 안 자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세부사항

참고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개최장소 :
3. 부 의 안 건 : 별 첨

년 월 일

과천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록

안전심의

과천도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

년 월 일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일시출석·심의안건

- 일 시 : 년 월 일(요일)
자 : 시 분
지 : 시 분
- 장 소 :
- 총 위 원 수 : 인
- 출석위원수 : 인
- 불참위원수 : 인
- 위 원 장 :

위원장이 년도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선언에 의거 관계직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별첨)와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3-2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의안 목록표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 명 : 의결내용 :			

[별지 제3-3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토의심의 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별지 제3-4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년 월 일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서명록

년 월 일

과천시공사

위 심의·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 명 날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제5항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안전관리대장

관리번호	제출일	제출기관	건명	상정일	심의결과

제 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서면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 날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과천도시공사사장 (인)

직 위	성 명	의 견	서 명	비 고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